



고체 납(Pb) 유해화학물질 규제 완화

일정조건 충족할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검토

추진부서 | 경기도 규제개혁과 ☎ 031-8008-4283

개선배경



- 납 및 납 제품 취급에 있어서의 위험성은 납을 끓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납흄(열에 의해 증발된 납이 냉각되어 생기는 미세한 중금속 소립자)이 발생되는 경우인데, 이는 주로 납이 함유된 페인트를 도장한 물체를 용접하거나, 끓는 점인 1,700°C 이상 용해하는 경우 발생함
- 취급과 운반과정에 있어 누출 및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낮지만, 관리기준이 엄격하여 비용과 행정처리에 있어 중소기업에 인력 및 금전적 부담이 큼
 - 고체 납은 액체 물질과 달리 취급 과정에서 누출이 일어나지 않지만, 수(水) 용해도가 높은 물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규제 · 관리되고 있음
 - 고체 납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이 운반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,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으로 등록된 법인회사에서 고체납을 운반할 수 밖에 없음
- 일정조건* 충족할 경우 허가 면제되도록 검토하겠으며, 일반형 화물자동차도 안전시설기준**을 갖추어 설치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재는 고체 납 운송 가능
 - * 비산되지 않는 괴 형태로 물반응성이 없어야 함
 - ** 응급조치 장비, 개인보호장구 비치 등

개선내용



〈 고체납 저장소, 운송차량 현장사진 〉



개선 전

-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
제6조(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)

② 규칙 제31조제7호에서 “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7. 환경부 고시 「제한물질 · 금지물질의 지정」 별표2 06-5-8호에 해당하는 화학 물질*(고체 상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)을 어린이용제품(장난감, 학용품 등)을 제외한 그 밖의 용도로 제조, 사용, 판매, 보관 · 저장, 운반 등을 하려는 자

개선 후

-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
제6조(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)

② 규칙 제31조제7호에서 “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7. 환경부 고시 「제한물질 · 금지물질의 지정」 별표2 06-5-8호 및 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 별표 97-1-9에 해당하는 화학물질*(고체 상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)을 어린이용제품(장난감, 학용품 등)을 제외한 그 밖의 용도로 제조, 사용, 판매, 보관 · 저장, 운반 등을 하려는 자

추진과정



- ('24.1.) 2024년 상반기 기업규제 발굴 건의(안산상공회의소→도)
- ('24.7.) 2024년 상반기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과제 검토결과 회신(행정안전부→도)
 - 일정조건 충족할 경우 허가 면제되도록 검토하겠으며, 일반형 화물 자동차도 안전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재는 고체 납 운송 가능

개선효과



- 화학물관리법의 획일적 적용에서 유독물질 특성에 따라 관리형태 · 수준 등을 차등화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유독물질 취급사업장의 규제비용 등 사회적 부담 경감 및 사업 적기 추진 가능

